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69
----------	-----

2021. 10. 22.(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황규철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1년 10월 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0월 13일

-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규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 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 운영을 위한 모범운전자 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의 중단과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제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과 장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
 -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 차원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관련 규정을 명시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고 그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보조금을 사업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지원 예산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조금 집행 사항 검사와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입법예고('21. 9.24. ~ '21. 9.30.)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용” 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 운영을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에 관한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황규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9
----------	-----

발의연월일 : 2021년 10월 1일
발 의 자 : 황규철, 김기창, 서동학,
박우양, 연철흙, 전원표,
박형용

1.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 운영을 위한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의 중단과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협 의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정책과
- 라. 조례안 예고 : 2021. 9.24. ~ 2021. 9.30.(의회 홈페이지)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이하 “연합회” 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충북지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
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의 중단) 연합회가 보조금을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본조신설 2012. 3. 21.]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 9. 7.]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9.>

④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선정 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교통안전 봉사활동, 교통사고 예방 행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 추진을 위한 예산

3. 관련조문

- 안 제3조(지원사업)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현재('21년도) 추진중인 모범운전자연합회충북지부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산출

-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지원 : 7,000천원(도비)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모범운전자 봉사교류 : 15,000천원(도비)

나. 추계 결과 : 2022년부터 매년 현재 지원 수준의 22,000천원 필요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모범운전자연합회 충북지부 지원사업	110,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 금년도와 동일수준으로 지원금 변동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출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110,000
도비(지원사업)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110,000
재원 조달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110,000
자체 수입	소 계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110,000
	지방세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110,000
	세외수입						